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알림

1. 「화장품법」 (법률 제15488호) 개정('18.3.13)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동 개정 고시를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 게재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붙임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1부.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보건복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7개 시도, 본부(52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무관	이선미	사무관	이만덕	화장품정책과장	전결 2020.9.1. 최미라
협조자					
시행	화장품정책과-7276	(2020. 9. 1.)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405	팩스번호	043-719-3400	/ sunmilee@korea.kr	/ 대국민 공개